

2026년 상반기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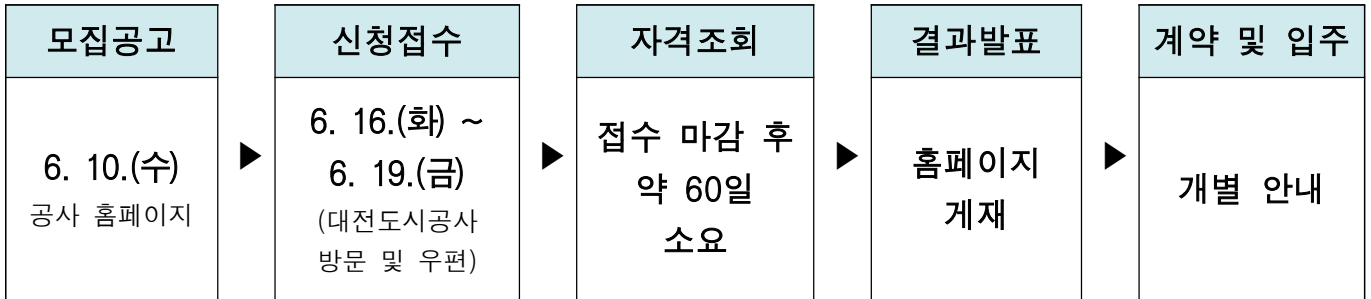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는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계약해지로 인해 퇴거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기자 순위」는 이전공고에서 입주대기자가 남아 있는 경우, 금번 모집공고 입주대기자는 이전공고 입주대기자 마지막 순번 다음부터 입주대기자 순위가 적용됩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6. 6. 10.(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방법) 입주대기자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대기자 자격) 대기순번 공고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구분	주요 내용
비치현황	- 주택별 개별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비치되어 있을 수 있으며, 품목이 다르거나 비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책임범위	- 비치된 가전제품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에 대한 보수나 교체는 임대인(공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 입주 시 이미 고장 상태인 제품을 포함하여, 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수리, 교체, 유지보수 비용은 입주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고장난 제품에 대하여 수리 대신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대체 물품을 비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단, 비치된 제품의 철거 및 폐기는 반드시 공사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해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책배경	- 공사는 주거 복지가 필요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5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비치 가전제품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을 공사에서 일괄 부담할 경우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공사는 저렴한 임대료 유지를 위해 해당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급 개 요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급대상 주택 : 총 185호

• 주택별 소재지,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목록” 참조

- * 상기 공급호수는 현재 공급 가능한 공실 주택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향후 공실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대상 주택의 총 규모를 의미하며,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으로 인해, 일반 공급 물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공급 주택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차량을 소유하신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주택의 주차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상 주택 중 동구 **오크라B** 다중주택은 별도의 취사시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목록” 참조		
	구분	1순위	2·3순위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II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6. 6. 11. ~ 2007. 6. 10. 출생자)
 -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① ~ 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순위(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함)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 16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은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576,036원, (2인) 6,452,897원, (3인) 8,168,429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576,036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신청 후에는 순위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신청자 →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 1·3순위 신청자 → 부모 무주택 가점 체크한 사람에 한하여, 부모 인적사항 필수 입력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증명서 제출 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3점 3점
② 부모 무주택 여부 *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 기재	부모 무주택	2점
③ 장애 여부 * 증명서 제출 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점 1점
④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1인) 2,669,354원, (2인) 3,519,762원, (3인) 4,084,215원	3점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3점 2점 1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III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방문·우편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접수시간: 10:00 ~ 17:00 (주말 제외, 11:30 ~ 13:00 제외) 방문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도시공사 3층 고객센터(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6. 6. 19.) 18시 이후 도착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입주대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 접수	2026. 6. 16.(화) ~ 2026. 6. 19.(금)	
자격 검증 및 소명	2026. 6. 22.(월) ~ 2026. 9월 중	소명 대상자 개별 안내
입주대기자 순번 발표	2026. 9월 중	공사 홈페이지 게재
주택 열람	주택 개방 일정 및 방법은 유선으로 별도 안내 예정	개별 안내
계약 체결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입주대기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득조회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공사의 통보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IV 제출서류

- 공고일(26. 6. 10.)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시: 99123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열람용 서류 인정 불가,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구 분	내 용	발급기관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장소에 비치,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첨부 ※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13자리 숫자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으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지문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순위별 검증대상 전원이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1, 3순위)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 서명(아래 참조) ※ 부모 무주택 배점 신청 또는 부모 관련 서류 제출 시 본인과 부모 서명, 그 외 본인 서명 (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1순위(부모님이 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부모 전원 서명 2순위 : 본인+부모 전원 서명 3순위(부모님이 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부모 전원 서명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입주자격 확인서류 (19~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구 분	내 용	발급기관
청년 (19세 ~ 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대학생 (만19세~만39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각서(첨부 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첨부 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취업준비생 (만19세~만39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으로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 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열람용 서류 인정 불가)

구 분	내 용	발급기관
수급자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또는 부모의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 기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열람용 서류 인정 불가)

세부자격	제출서류	발급기관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이혼 시에 한하여 제출 * (주의)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내역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주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순위만 제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가능 (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기타 임대주택용] 맞춤형 임대주택 순위확인서)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6. 6. 10. ※ 발급관리번호 : 2026980110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은행 청약홈

* 1순위는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IV

기타 유의사항

항목	제출서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기재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는 계약 시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면 부모 범위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r/>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hr/> <p>※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p>
동호배정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관련 안내는 기본 신청서류(본인 작성) 통과 후 순차적으로 주택을 배정하여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선착순 동·호수를 지정하여 선 계약체결 후 자격검증(주택·소득) 통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계약이 취소·해지되며 퇴거조치 됩니다.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가장 후순위 입주대기자로 등록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관련 (기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임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 첨부된 주택목록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2024.12.18,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시, 계약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변경도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공사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대전도시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주거복지1팀 530-9296~7, 9281

2026. 6. 10.

대전도시공사

참 고 사 항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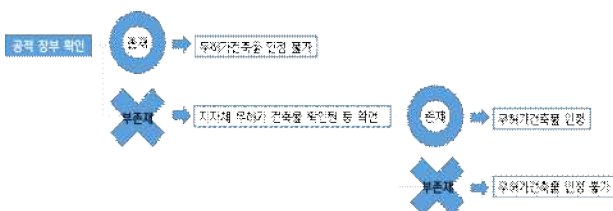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요약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 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상세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총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p>*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금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예수금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검증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